

우덕 연구비

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2년 5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덕윤덕병재단의 회사금을 재단의 뜻에 따라 장연구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연구 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라고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의 연구과제는 소장 및 대장 분야의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기초, 중개 및 임상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결정하고 연 1 또는 2건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연구과제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5조 추천구비서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본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소정양식)
- 추천서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1명)
- 이력서 (사진)
-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목록
- 연구계획서
 - 연구의 필요성 (개요, 연구동향, 중요성)
 - 연구 목표
 - 연구 목표의 창의성·도전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수행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비 사용 계획서
- 서약서 (소정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제6조 연구과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 제 1항.** 1. 연구비 지원 심사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 부회장 2인, 연구위원장 및 회장이 위촉한 5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제 2항.** 심사위원회는 공고 시 발표되는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수상자를 선정한다.
- 제 3항.**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과제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 조 연구비 지원과 연구 기간

학회는 책임연구자에게 연구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 논문을 2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사사 표기 양식)

- 1) 국문: 이 연구는 OOOO년도 대한장연구학회 우덕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2)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WooDuk Scholarship Foundation to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00.

제10조 연구비 환수

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위배하거나 제9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제 11 조 부칙

- 제 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대한장연구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 2항.** 본 규정은 본 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